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170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11. 18.

판결 선고2020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0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다만, 별지 '청구원인' 중 원고가 2014. 9.말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,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민수

별지